17세기이후 토관계를 페지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와 그 평가

양 영 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그 진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것입니다.》(《김정일전집》제5권 444폐지)

17세기이후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는 실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고 많은 실학자들에 의하여 일련의 사회개혁안들이 제기되였다.

실학자들이 제기한 개혁안들은 국가와 사회발전, 사람들의 생산활동에 실지로 쓸모있는 학문에 바탕을 둔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당시로서 진보적인것들도 있었다.

토관계에 대한 개혁안도 그러한것들중의 하나였다.

이 글에서는 17세기이후 실학자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중에서 지방토호들만이 받게 되여있던 토관계를 폐지할데 대한 견해를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조선봉건왕조시기 토관계가 설치운영된 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보려고 한다.

토관계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지방차별대우를 받고있던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와 같은 일부 지역들의 토호출신들에게 주던 벼슬품계의 총체라고 할수 있다.

토관계가 처음으로 실시된것은 세종통치년간이였다.

15세기이후부터 봉건왕조는 품계제도를 더욱 정비보강하는 한편 저들의 왕권을 강화 하려는 목적밑에 일부 지방의 토호들에게 문무량반들이 받게 되여있는 정직과 완전히 구 별되는 토관계를 실시하였다.

1429년 1월 리조(행정부서)에서는 함길도와 평안도에 두고있던 토관벼슬을 조정관리들의 벼슬품계와 대등하게 대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토관벼슬의 5품은 조정관리의 6품과 맞먹게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품계도 차례로 낮추게 하자고 제의하였다.(《세종실록》권43 11년 1월 정오)

봉건통치배들이 15세기에 정부관리들과 엄격히 구별되는 토관계를 따로 설정한 목적은 봉건국가의 특별한 고을의 토호출신들에게 토관계를 주어 그들을 포섭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확립하자는데 있었다. 이와 함께 봉건국가의 관료등급질서에 대한 토호출신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을 왕권강화에 리용하자는데 있었다.

당시 토관계는 봉건국가의 정부관리들에게만 주던 정직계에 비해볼 때 그 격이 매우 낮았으므로 지방토호세력들은 중앙관리들로부터 하대를 받은것으로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함길도의 토관들은 1467년의 함길도농민전쟁에 가담하였으며 간혹 봉건정부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토관계는 세종통치시기 일부 지방토호들에게 주던 하나의 품계로 제정 되였다.

다음으로 토관계를 없앨것을 주장한 실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17세기이후에 들어서면서 봉건왕조는 지방토호세력들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토관계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625년 조선봉건왕조 16대 왕이였던 인조는 우리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넓

지 못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인재를 전혀 등용하지 않고있는 폐단에 대해 지적하면서 남북에 관계없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인조실록》 권10 3년 10 월 계사)

그후 현종, 숙종통치년간에도 서북인차별을 완화하려는 목적밑에 서북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과거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하였고*¹ 뛰여난 인재들을 대간직에 임명하는 새 로운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하였다.*²

- *1《현종개수실록》권12 5년 11월 기유
- *² 《숙종실록》권39 30년 3월 갑진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실지로 봉건국가가 서북인들을 위해 취한것이 아니라 함길도농 민전쟁과 같은 인민들의 투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때문에 서북인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건왕조의 지방차별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고있었다.

1681년(숙종 7년) 1월 룡천 유학 장신한의 상소문은 그에 대하여 자세히 전하고있다.

그는 상소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요점은 례절과 의리를 배우고 학교를 세우며 관리의 등용과 해임을 명백하게 하며 법질서를 자세하게 하며 상과 벌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동북계의 문관이나 무관도 응당 훌륭한 벼슬자리에 등용하여야 합니 다.》라고 하였다.(《숙종실록》 권11 7년 1월 임오)

이 상소문의 기본내용을 추려보면 하나는 이 지역에 한정되여있는 토호출신들을 국 가의 중요한 벼슬자리에 등용하는것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방차별정책 을 완화시켜 관리들의 품계와 벼슬자리를 높여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이후 보편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이것은 그 이전시기에 볼수 없 던 현상으로서 지방차별을 폐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8세기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전시기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출신들이 중앙관리는 물론 지방교을원으로 임명되는 례가 극히 드물었다. 간혹 작은 교을의 원으로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높은 벼슬에는 오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리중환은 《택리지》에서 《…평안, 함경 두 도는 300년동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다. 혹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벼슬이 현령에 지나지 못하였고 간혹 대간이 되여 왕을 가까이 섬기게 된자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드물었다.》라고 하였다.(《택리지》 함경도)

그후 봉건왕조는 지방차별을 반대하는 토호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해 토관계를 받고있던 지방토호출신들을 점차 중앙벼슬에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말엽이후 봉건왕조는 지방차별정책을 완화할데 대한 실제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1727년 평안도사람들을 도총부에 추천하도록 한 사실,*1 1729년과 1731년 서도와 북도, 송도인을 등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였다.*2

^{*1 《}영조실록》권13 3년 10월 정유

^{*2 《}영조실록》 권22 5년 5월 을묘, 권30 7년 7월 임신

지방차별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그후 정조, 순조통치년간에 와서 보다 적극화 되였다. 특히 이 시기 서북지방의 무인들을 벼슬에 등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였다.

당시 봉건국가는 군사전략상요충지인 서북지방을 강화할 목적밑에 그 해결방도를 이 지역의 무인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는데서 찾았다.

1781년 국왕 정조는 서북지방의 무사들을 고무격려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데 이어 북도사람 한광제와 관서사람 정성곡을 각각 경상수사, 고을원으로 임명하도록하였으며*1 1789년 관서와 관북의 룡흥이북과 증산이북에만 두었던 별부료군관직을 남관(마천령이남)과 청천강이남에도 확대시켰다.*2 또한 1792년 북도사람이였던 승문원 판교손석주에 의해 서북지방사람들에게도 선전관추천을 허락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3

*1, ^{2, 3} 《정조실록》권12 5년 11월 기해, 권27 13년 윤5월 정미, 권34 16년 4월 정사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북인들에게 선전관직과 승문원직을 추천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1806년 교서관 판교 류정은 상소를 올려 서, 북인차별에 대해 진술하면서 북도와 서도가 력사적인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문관으로서는 승문원의 관리로 나가는것이 저지당하였고 무관으로서는 선전관으로 되는것이 금지당하여 천시되고있다고 하면서 서도와 북도의 문관, 무관들가운데서 지체와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구별하여놓고 남쪽도들의전례에 따라 승문원과 선전관벼슬에 나가는 길을 열어줄것을 제기하였다. 당시 국왕이였던 순조는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서북인차별이 완화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였다.(《순조실록》권9 6년 9월 경신)

서, 북인들에게 선전관직과 정직계동반직에 포함되여있는 승문원벼슬을 주는것을 허락한것은 그 지역관리들의 벼슬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가 해제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토관계가 유명무실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류형원은 토관계가 유명무실해진 조건에서 정부관리들에게만 주던 정직계 와 구별되던 토관계를 완전히 없앨것을 주장하였다.

19세기 실학자인 정약용도 자기의 저서인 《경세유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본조의 제도에는 문과의 초입사를 3원에 갈라배치하되 청족은 승문원으로, 서북인은 국자원으로, 중인 및 서족은 교서원으로…무과의 초입사는 3원으로 나누어 청족은 선전천으로, 다음은 부장천으로, 최하는 수문천으로 한다.》*1라고 하면서 인재등용을 재능과지혜를 따지지 않고 문벌의 귀천과 지역의 멀고 가까운것만을 따지므로 《인심의 불평불만과 인재의 결핍, 국가발전의 침체》가 모두 이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비판하였다.*2

*1,2 《경세유표》권2 하관병조, 권3 춘관례조

조선봉건왕조시기 관리등용법에 의하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하여야 하였으며 과거급제자들은 분관법에 의하여 문벌과 신분에 따라 문관인 경우에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그리고 무관인 경우에는 선전관, 부장, 수문장 등의 순위로 초입사직이 정해져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서북인들이 승문원과 선전관직에 임명되게 된것은 토관출신들도 정직계를 받을수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19세기에 와서 토관계가 더욱 유명무실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17세기이후에 토관계가 점차 유명무실해진것은 지방차별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상품화폐관계의 장성, 신분관계의 문란으로 봉건적중앙집권력이 약화된 결과였다. 한편 토호 출신들의 정부관리들만이 받게 되여있던 정직계로의 진출이 강화된것과 관련되였다. 그후 토관계는 점차 쇠퇴되였으며 1894년 부르죠아개혁때 기본상 폐지되였다.

다음으로 토관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의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토관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은 당시의 조건에서 진보적이였다.

우선 신분적차이에 따라 실시되던 토관계를 없애고 정부관리들이 받던 정직계를 줄 데 대하여 제기한것이였다.

품계는 봉건왕조가 지배계급내부에서 봉건관료질서를 강화하려는데로부터 나온 하나 의 제도로서 그 내부에는 일련의 신분적제한성이 있었다.

실례로 정직계는 량반신분층을 비롯한 지배계급출신들이, 토관계는 지방토호세력들이, 잡직계는 잡무와 기술관청에 복무하는자들이 받게 되였다.

이러한 신분적차이는 지배계급속에서 불만을 야기시켰다. 그것은 정직계를 받고있던 자들이 토관계를 비롯한 다른 품계를 가지고있던자들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기때문이다. 그러나 토관계는 록봉이 없는 토관들에게 주던 품계로서 그것을 받고있던 토관들의 처지는 정부관리들보다 한심하였다.

또한 토관계가 유명무실해진 조건에 맞게 그것을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제기한것이였다.

당시 토관계를 받고있던 지방토호들은 명칭만 있고 실속없이 명예직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봉건왕조가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그들로부터 반항에 부딪칠 우려가 없었다.

따라서 류형원은 정부관리들만이 받고있던 정직계이외 모든 품계의 종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벼슬의 독점화를 실현하려던 소수 특권량반신분충들의 관료질서를 반대한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토관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은 제한성도 가지고있었다.

제한성은 우선 실학자들이 가지고있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부터 신분평등, 벼슬의 완화 등 봉건국가의 모든 통치제도를 개편할수 없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봉건국가를 전제로 한 그들의 개혁안들은 한갖 론의에 불과하였다는데 있다.

제한성은 또한 국왕을 비롯한 소수 특권관료들이 벼슬독점을 영구화하려는 진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일부 벼슬등급질서를 개혁하려는 실학자들의 소극적인 립장을 반영하였 다는데 있다.

이처럼 17세기이후 토관계를 폐지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은 일정한 제한성이 있으나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볼 때 진보적인 견해로서 의의를 가진다.